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제헌절을 공휴일에 추가〉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86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6.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공포한 날이라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에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 행	임오경의원안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 10. (생략)	제2조(공휴일) ----- -----. 1. ----- <u>국경일</u> 2. ~ 10. (현행과 같음)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u>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 ② (생략)	

2. 검토의견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¹⁾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있음.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1949. 10. 1.) 이후 1950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어오다 2005년부터 도입된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라 공직사회 등 사회 전반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²⁾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893호, 2005.6.30.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직사회 및 사회전반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중 식목일(4월 5일)을 2006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을 2008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2005. 6. 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021년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91호, 2021.7.7.제정)에도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데,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제헌절은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점,³⁾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공휴일 확대에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헌절이 공휴일이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⁴⁾에 따른 유급 휴일이 되므로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 관공서

3) 제정 헌법은 1948년 6월 30일 상정, 7월 12일 의결, 7월 17일 공포되었음.

4)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가 휴무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 등 사회적인 파급효과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공휴일 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주요국가 공휴일 수>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공휴일 수	15일	16일	11일	12일	8일	10일	11일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은 헌법을 공포한 날에 대한 국민적 차원에서의 기념, 국민 휴식권 보장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공휴일 확대는 이해관계가 다양한 사안이므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수(15일)가 주요 선진국 대비 적지 않은 수준이고 최근 대체공휴일('21년 4일, '23년 2일)을 확대해 온 상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는 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의 휴식권 강화 및 내수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나, 전체 공휴일 현황과 해당 공휴일의 의미, 최근 대체공휴일 확대로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제헌절 공휴일 지정에 관한 설문조사⁵⁾에서 응답자의 과반

수인 88.2%가 공휴일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342

5) 엘립넷 나우앤서베이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국민의견을 듣고자 2024년 7월 16일~17일 만 18세이상 전국 패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https://www.nownsurvey.com/>)